

# 자산관리기준 및 영업점임차계약기준 주요 개정내용

## □ 개정사유

- 「2019년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결과」 관련, 본점사옥 임대보증금 산정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규정화 요구
  - 통보사항 : 임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대차금액 산정기준 객관성 확보
- 본점사옥 임대시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효율적인 임대차 관리 추진
  - 본점사옥 임대계약 및 영업점 임차계약의 투명성 확보,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

## □ 주요 개정내용

### ○ 개정내용 요약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○ 자산관리기준 : 총 8개장 71개조, 2개 별표	○ 자산관리기준 : 총 8개장 72개조, 2개 별표	개 정 : 1개 조항 신 설 : 1개 조항
○ 영업점임차계약기준 : 총 4개장 11개조, 1개 별표	○ <u>자산임대차심의위원회 운영기준</u> : 총 5개장 11개조, 1개 별표	명칭 변경 개 정 : 7개 조항, 1개 별표 신 설 : 4개 조항 삭 제 : 4개 조항

- (심의위원회 운영 등) 현재 운영중인 ‘영업점임차계약기준’을 ‘자산임대차심의위원회 운영기준’으로 명칭 변경하여 업무 수행 범위 확대
- (임대 결정) 위원회는 매년 초 본점사옥 임대 관련 연간 기준임대가를 결정하며, 본점사옥 신규 임대 건 발생 시 기준임대가를 토대로 인근 유사물건 실례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계약 체결

□ **자산관리기준**

○ **【개 정】 1개 조항**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14조(토지, 건물의 임대차)	제14조(토지, 건물의 임대차)	· 임대차 업무범위 확대

○ **【신 설】 1개 조항**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(신설)	제 14조의 1 (자산임대차심의위원회)	· 심의위원회 구성 · ‘2019년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’ 반영

□ **영업점임차계약기준**

○ 자산임대차심의위원회 운영기준으로 명칭 변경 및 11개 조항 1개 별표로 전면개정

○ **【개 정】 7개 조항, 1개 별표**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1조(목적)	제1조(목적)	· 조문 정비 · 용어 변경
제5조(구성)	제2조(구성)	· 조문 정비
제5조의1(임기)	제2조의1(임기)	· 조 이동
제6조(업무)	제3조(업무)	· 본점 기준임대가 결정 · ‘2019년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’ 반영
제7조(운영)	제4조(소집 및 의결)	· 조문 구체화
제8조(비용)	제5조(비용)	· 조 이동

제11조(적용배제)	제11조(적용배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5개 지점 이외의 영업점 임차심의 관련 적용제외</li> </ul>
【별표 1】	【별표 1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업점 물건지 평가 기준 명확화 및 현행화</li> </ul>

○ 【신 설】 4개 조항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(신설)	제6조(임대심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대심의 기준 명확화</li> <li>'2019년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' 반영</li> </ul>
(신설)	제7조(결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019년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' 반영</li> </ul>
(신설)	제8조(임차심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용어 변경</li> <li>임차심의 기준 명확화</li> </ul>
(신설)	제9조(결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문 정비</li> <li>용어 변경</li> </ul>

○ 【폐 지】 4개 조항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2조(조사항목)	(삭 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산관리기준 제14조(토지, 건물의 임대차)에 반영</li> </ul>
제3조(구성)	(삭 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【별표 1】 영업점 물건지 선정 평가표에 반영</li> </ul>
제4조(목적)	(삭 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산관리기준 제14조의1(자산 임대차심의위원회)에 반영</li> </ul>
제9조(평가 및 선정)	(삭 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8조(임차심의) 및 제9조(결정)에 명시</li> </ul>

□ 시 행 일 : 2020. 12. 18.